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연락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 대상자

대상자		주소	발급기간	공고사유
성명	생년월일			
김*연	2007.12.25.	서대문구 모래내로17안길 ***	2025. 1. 1. ~ 2025. 12. 31.	등기우편 반송, 연락불가
장*은	2007.12.01.	서대문구 가좌로 ***		
김*영	2007.12.07.	서대문구 증가로6길 ***		

2. 공고기간 : 2024. 12. 31. ~ 2025. 1. 14.

3. 신청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4. 발급기간 : 2025. 1. 1. ~ 2025. 12. 31.(12개월)

## 5. 발급준비물

가.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학생증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 증명서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지 관할 이·통장의 확인을 받거나,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 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동행(신분증 지참)하여 확인 가능

나.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매(3.5cm x 4.5cm)

- 본인이 직접 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진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증 발급기간 내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 제40조에 의거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2-330-8592, 담당자 : 장민주)

2024. 12. 31.

흥은제2동장(인)

